

「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6월 17일

중소기업청장

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*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,

*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의 원칙적 금지(유출시 과징금 부과)

계약당사자 명칭을 변경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근로계약서 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

○ (현황 및 문제점)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시행 예정('14.8.7)

○ (개정안)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

계약당사자 명칭 변경

○ (현황 및 문제점) 근로계약서 상 계약당사자의 명칭이 '갑', '을'로 명명되어, 사회적 풍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

○ (개정안) 계약당사자 명칭을 '사업주', '근로자'로 변경

3. 의견제출

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4. 6.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

중소기업청 운영지원과

(전화 042-481-4587, Mail : parkJH@smba.go.kr)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근로계약서

()중소기업청장(이하 “갑사업주”이라 함)과 _____
 (이하 “을근로자”이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“을”의 인적사항

성명	성별	연령(만)	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	현주소	
전화번호(휴대폰)		연락처(주택)	최초계약일	근무부서	근무형태

2. 직종,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

- 직종 :
- 근무부서 :
- 수행업무 : _____ 및 그 밖의 부서장의 지시사항

3. 근로계약기간 : _____

[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기간]

4. 근로시간

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1주 40시간으로 하며,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

[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을 별도로 기록]

5. 휴일

매주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하며, 그 밖에 근무일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

6. 휴가

휴가는 연차유급휴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로 구분되며, 연차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「근로기준법」을, 그 밖의 휴가에 대해서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

7. 보수

○ 기준연봉 : _____ 원 [_____ 원 × _____ 월]

○ 가족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.

○ 기준연봉은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며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○ 임금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(예금계좌 : _____).

※ 기준연봉 외에 근무성적 평가, 교육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8. 해고

○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때,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, 업무량 변화·예산감축·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.

○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연속 3회 이상 “불량”에 해당된 때에도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.

9. 그 밖에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노동관계 법령 및 「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」(중소기업청 훈령)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() 중소기업청장(갑사업주) : _____ (인)

_____ (을근로자) : _____ (인)